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
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1439호
- 다. 제출일자: 2023. 10. 16.
- 라. 회부일자: 2023. 10. 23.

2. 제안사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,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사업비 및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,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증액하고,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대비 20% 초과 감액하여,
- 나. 비용자성 사업비(효율적인 폐기물처리)를 31,001백만원, 예치금을 7,82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다. 수입계획 변경 없음

라. 지출계획 변경내용: 비용자성 사업비 3,858백만원 증액, 예치금 4,859백만원 감액

구 분	당 초 (A)	1차변경 (B)	2차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C/A)
계	39,824	41,377	38,823	△1,001	△2.5%
비용자성사업비	27,143	31,001	31,001	3,858	14.2%
예치금	12,681	10,376	7,822	△4,859	△38.3%

〈1차 변경〉

-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(6,463백만원→8,561백만원)
-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지원 증액(768백만원→798백만원)
-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액(10,036백만원→10,536백만원)
-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민복지증진사업 증액(9,876백만원→11,107백만원)
- 예치금 감액(12,681백만원→10,376백만원)

〈2차 변경〉

- 정책사업비인 예치금 감액(12,681백만원→7,822백만원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현행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,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예산 대비 38.3% 감액¹⁾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-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에 두 차례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음.

이 중 1차 변경('23.7.26.~28.)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 등 총 5건에 사업에 대해 계획이 변경되었으나, 정책사업비 각각이 당초 예산 대비 20%를 초과하지 않았고, 2차 변경('23.10.17.~18.)에서 예치금 감액 규모가 당초 예산 대비 20%를 초과(△38.3%)하였음.

- 본 변경안은 사업의 신규 편성이나 변경이 아닌 예치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인바 별도의 의견은 없음.

〈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1, 2차)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당 초 (A)	1차변경 (B)	2차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C/A)
계	39,824	41,377	38,823	△1,001	△2.5%
정책사업비 (비용자성사업비)	27,143	31,001	31,001	3,858	14.2%
정책사업비 (예치금)	12,681	10,376	7,822	△4,859	△38.3%

1) 1차 변경: 정책사업비(예치금) 23억 5백만원 감액(당초 금액 대비 18.2%, 2023년 7월 26일)

2차 변경: 정책사업비 48억 5천9백만원 감액(당초 금액 대비 38.3%, 2023년 10월 17일)

〈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현황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사 업 명		당초	변경	증 감		
				증감액	비율	
1 차	1	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	6,463	8,561	2,098	32.5
	2	자원회수시설 주민협약체 지원 증액	768	798	30	3.9
	3	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액	10,036	10,536	500	5.0
	4	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민복지증진사업 증액	9,876	11,107	1,231	12.5
	5	예치금 감액	12,681	10,376	△2,305	△18.2
2 차	1	예치금 감액	12,681	7,822	△4,859	△38.3